

1. 개정이유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설을 통해 18세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탈북무연고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에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여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의지를 제고하고자 함. 민원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산금 지급사유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정의하는 ‘무연고청소년’ 중 18세 이상의 자를 추가(안 제6조)

나.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에도 ‘새출발장려금’ 등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안 제6조의 2)

1) 거주지 보호기간 내 출산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변경

2)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신설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전자적 확인을 가능하게 하여 민원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민원인의 편의 도모(안 제3조의6, 제6조, 제8조의2)

라. 위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개정(별지 제4호의4,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9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 반영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제1항 후단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혼인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이면서 18세 이상인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라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항제5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현재 무연고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산금 지급 기간 중 매년 1월과 가산금 지급 신청 시에 제출)

제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2. 장려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탈북한 날짜			⑥ 입국한 날짜	
	⑦ 사용용도				
⑧ 가족관계 (직계)	성명	생년월일	관계	국내 입국 여부	국내 취적(就籍) 여부
⑨ 배우자 확인 사항	성명		생년월일		결혼일
	국내입국 여부	[] 국내입국(), [] 미입국() [] 그 밖의 사항()			
⑩ 신청사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배우자가 보호결정을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혼인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2.주민등록표 초본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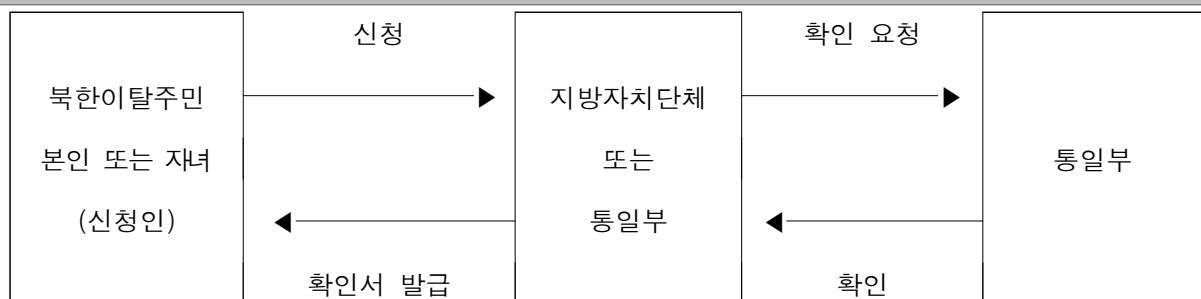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⑥란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입국일을 적습니다.
2. ⑦란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의 사용 용도를 적습니다.
3. ⑧란은 직계가족을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순서로 적습니다.
4. ⑨란은 배우자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5. ⑩란은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유를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금 지급신청서(고령, 한부모가족 아동)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하나원 기수	
	③ 생년월일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가족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⑦ 가산금 지급사유	지급사유(중복표기 가능)		구체적 사유	
	[] 고령(60세 이상)			
	[] 한부모가족 아동(13세 미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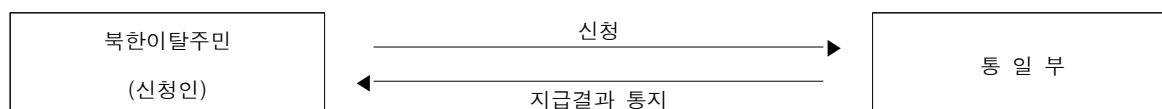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산금 지급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산금 지급신청서(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청소년)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①성명	②하나원 기수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가족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⑦ 가산금 지급사유	지급사유(중복표기 가능)	구체적 사유
	☐ 장애	
	☐ 장기치료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 무연고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장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기치료: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지급 신청인이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가족관계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등 현재 무연고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산금 지급기간 중 매년 1월과 가산금 지급 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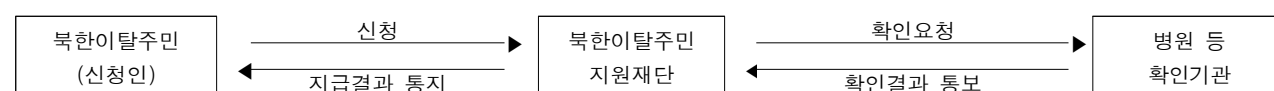
본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신청인 본인의 가산금 지급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의3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취업장려금 ☐ 새출발장려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하나원 기수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전화번호				
장려금 지급사유	종류	구체적 사유			
	⑥ 취업	취업기간			
		업종			
		가입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그 밖의 사항	⑦ 이미 수령한 장려금	[] 해당 없음 [] 취업(회) [] 새출발(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통장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 신고내역(조회 화면) 5. 신청인의 취업기간 급여내역이 명시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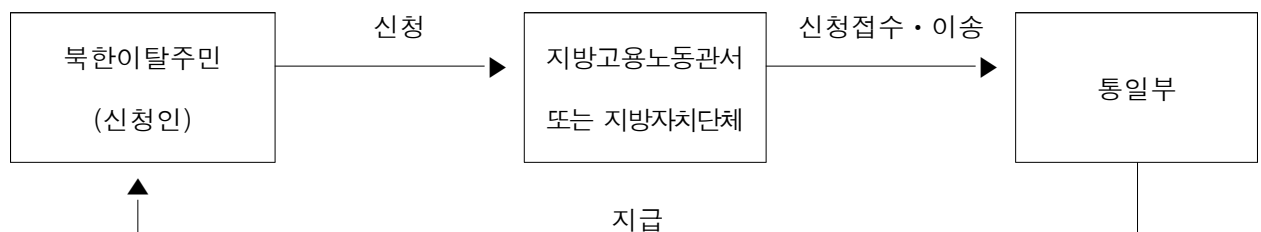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⑥, ⑦란은 장려금 지급 사유 등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별지 제9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지원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입국일	④ 보호결정일
	⑤ 주소	
(⑥ 전화번호:)		

⑦ 취학자	보호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자녀 * 자녀의 경우, 부 또는 모가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결정되고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성명(자녀의 경우)	생년월일(자녀의 경우)
	학교구분*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	
	학교	학과(8자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1부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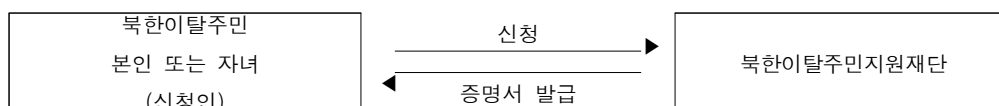
본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②, ③, ⑥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④, ⑤란은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 ⑦란은 교육지원 수혜자(본인 또는 자녀)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란은 취학해 지원받으려는 교육기관을 선택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 및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2항,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의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가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가산금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주민등록표 초본</u> 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주민등록표 초본</u> 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6(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 ----- ----- ----- ----- ----- ----- ----- ----- <u>혼</u> <u>인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u> , <u>주민등록표 초본</u> ----- ----- <u>혼인관계기록사항에</u> <u>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u>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u> 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 ----- ----- ----- ----- ----- ----- <u>경우</u> ----- ----- <u>다만, 제5호의</u>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영 제39조제8항에 따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 다. (생략)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1조의2제1항의 무연고 청소년이면서 18세 이상인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5호 -----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라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생 략)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라. 제1항제5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현재 무연고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산금 지급 기간 중 매년 1월과 가산금 지급 신청 시에 제출)

2.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

2. 장려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1. 2. (생략) ② 삭제 ③ ~ ⑦ (생략)	----- --.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